

강원개발공사 임원(비상임이사) 모집 공고

강원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직위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1. 모집 직위 및 인원

-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: 비상임이사 6명
- 임용기간: 임용일로부터 3년

2. 응모자격요건 ※붙임1 참고

- 공사 정관 제33조의1 “임원의 결격사유”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, 다음 자격요건(①~⑦)중 최소 하나를 갖춘 분
- ① 공기업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) 및 투자재투자기관, 출연기관의 임원(비상임 포함)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분
- ② 국내 대기업(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“별표1”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)에서 임원(비상임 포함)급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(4급 상당 이상) 경력이 있는 분
- ④ 위 ①, ②의 기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신 분
- ⑤ 국내외 대학교 관련 분야의 전임교수로 10년 이상 강의(근무) 경력이 있는 분
- ⑥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변호사, 기술사, 건축사,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
- ⑦ 기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

< 임원의 결격사유 >

- 1) 미성년자
- 2)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- 3) 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4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피성년후견인
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경영성과계약, 경영평가, 사장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
 - 정당한 사유의 경영 개선 명령 불이행 및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
- 6)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주요 직무

-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사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

4. 직무수행요건

- 붙임2 참고

5. 제출서류

-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소정 양식)
- 직무수행계획서(소정 양식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소정 양식)
- 경력증명서 1부
- 최종학력 증명서 1부

※ 소정양식은 강원개발공사 홈페이지(<https://www.gdco.co.kr>)에서 다운 받아 작성

6.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

- 접수기간: 2026. 10. 19.(월)~2026. 11. 4.(수)
- 접수방법: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- 접 수 처: 우)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

강원개발공사 인사홍보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

※ 접수 마감일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확인 바랍니다. (접수확인 : 033-259-6383)

7. 전형방법 및 임용절차

- 전형방법: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
가. 서류심사: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(합격여부 개별통보)
나. 면접심사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(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)
- 임용절차: 후보자 추천(임원추천위원회) → 임명(도지사)

8. 기타사항
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무효 및 합격이 취소

처리되며, 임용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
-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후 30일 이내 응시자가 반환 청구한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(청구 후 14일 이내, 반환비용 청구인 부담)하며 반환 청구하지 않은 채용 서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-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 재공고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수수준은 당해 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문의: 033-259-6383)

2026년 10월 19일

강원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

□ 붙임1.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[별표1]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평균매출액등 1,800억원 이하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
3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4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5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,200억원 이하
8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9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2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3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
14. 건설업	F	
15. 도매 및 소매업	G	
16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
17. 광업	B	
18. 담배 제조업	C12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19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0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22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23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
24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25. 수도업	E36	
26. 운수 및 창고업	H	
27. 정보통신업	J	
28. 음료 제조업	C11	
29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30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31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32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33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4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(N76 제외)	

35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39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(S94 제외)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41. 금융 및 보험업	K	
42. 부동산업	L	
43. 임대업(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)	N76	
44. 교육 서비스업	P	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□ 붙임2. 비상임이사 직무수행요건

직무수행요건

직위명: 비상임이사

1. 담당직무

-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

2. 직무수행요건

- 법령상의 요건
 - 대한민국 국민인 자
 - 공사 정관 제33조의 1(임원의 결격사유)과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 -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요건을 갖춘 자
- 학력 및 전공분야: 제한없음
- 기타 능력 요건
 - 강원개발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자
 - 개혁성, 리더십, 기업가적 능력, 전문성,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, 비전 제시 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, 청렴도, 도덕성, 준법성을 갖춘 자